

『 금융회사간 외화이체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약관 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1.01.08

2. 개정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제1조 (목적) (생략)	제1조 (목적) (좌동)	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-⑨ (생략) ⑩ "공인인증서"라 함은 웹사이트의 결재업무 이용시 이용기관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 이용기관은 각 이용회원마다 다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	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-⑨ (좌동) ⑩ "인증서"라 함은 웹사이트의 결재업무 이용시 이용기관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 이용기관은 각 이용회원마다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	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
제3조 - 제4조 (생략)	제3조 - 제4조 (좌동)	
제5조 (웹서비스 이용 및 제한) ① 결제은행은 이용회원이 제출한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, 전자인증서 등이 ~ (이하 생략) ②-⑤ (생략) ⑥ 결재업무 이용시 공인인증서 방식을 택한 이용기관의 경우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결제은행은 이용기관의 결재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용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거쳐 결재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(생략)	제5조 (웹서비스 이용 및 제한) ① 결제은행은 이용회원이 제출한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, 인증서 등이 ~ (이하 좌동) ②-⑤ (좌동) ⑥ 결재업무 이용시 인증서 방식을 택한 이용기관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결제은행은 이용기관의 결재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용기관은 인증서의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거쳐 결재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⑦ (좌동)	정의되지 않은 용어 정비 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
제6조 (생략)	제6조 (좌동)	
제7조 (결재업무의 이용) ① 이용기관의 결재업무시 ~ (중략) ~ 이를 위한 결재업무 처리 방법은 승인 비밀번호 방식과 공인인증서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② (생략)	제7조 (결재업무의 이용) ① 이용기관의 결재업무시 ~ (좌동) ~ 이를 위한 결재업무 처리 방법은 승인 비밀번호 방식과 인증서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② (좌동)	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

<p>③ 웹사이트에서 결제업무시 ~ (중략) ~, 승인이용자가 입력하는 승인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 (책임과 의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이용회원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, 전자인증서 등을 포함하여 ~ (이하 생략)</p> <p>다-바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 (면책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결제은행이 이용기관이 사용한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이 결제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</p> <p>제11조 - 제 15조 (생략)</p>	<p>③ 웹사이트에서 결제업무시 ~ (좌동) ~, 승인이용자가 입력하는 승인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(좌동)</p> <p>제8조 (좌동)</p> <p>제9조 (책임과 의무)</p> <p>① (좌동)</p> <p>1. (좌동)</p> <p>2. (좌동)</p> <p>가. (좌동)</p> <p>나. 이용회원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, 인증서 등을 포함하여 ~ (이하 좌동)</p> <p>다-바. (좌동)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10조 (면책)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결제은행이 이용기관이 사용한 이용자 번호(User ID), 로그인 비밀번호, 승인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등이 결제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</p> <p>제11조 - 제 15조 (좌동)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 <p>정의되지 않은 용어 정비</p> 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
---	---	--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